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1. 4. 17

다. 상 정 일 자 : 2001. 4. 17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나. 개정사유

- 군정주요시책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등의 지급규정이 없어 군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하므로,
- 동 조례를 제정하여 보상규정을 명문화하고 군정수해에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목 적 (안 제1조)

- 군정주요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규정

○ 적용 (안 제2조)

-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이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함.

○ 대상 (안 제3조)

-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

○ 실비보상의 내용 (안 제4조)

-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 지급

※ 예외 (안 제3조 제3호)

○ 실비보상 기준 (안 제5조)

- 여비등의 보상기준 : 국내여비규정 별표1 및 별표2 준용

※ 예외 (안 제3조 제5호)

- 수당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 적용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정열)

- 본 세정 조례안은 각종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여비 및 수당등 일정액을 보상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 군정수행 과정에 군민의 참여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며,
- 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일정액의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보상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됨.
- 다만,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인의 참여와 역할 수행의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라는 비판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이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외 심의의결을 거치는등 세정 절차상의 문제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상충여부등의 문제는 없는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 “ 생략 ”

5. 토론요지 : “ 생략 ”

6. 심사결과 : “ 수정가결 ”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첨 부 :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화순군민간인에 대한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한수정안

화순군민간인에 대한실비보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호중 “ 명예간독관 ”을 삭제하고, 동조 제4호중 “ 지원봉사자 또는 봉사
요원 ”을 “ 민간인 ”으로 한다.

안 제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매식단가 및 교통실비만을 지급한다.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등의 지급 (이하“실비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
2. 평가단원·통신원·조사원·안내원 등 군정 특수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로 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
3. 환경보호·문화재보호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등을 신고한 민간인
4. 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대학생

제4조 (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경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매식 단가 및 교통실비만을 지급한다.

제5조 (실비보상의 기준) ①여비등의 보상기준은 국내여비규정 별표1 및 별표2를 준용한다. 단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수당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원 안 | 수 정 안 |
|---|---|
| <p>제3조 (대상) (생 략)</p> <p>1. (생 략)</p> <p>2.평가단원 · 통신원 · 조사원 · 안내원 · 명예감독관 등 군정 특수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p> <p>3. (생 략)</p> <p>4.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문화 · 체육 · 관광 · 복지 · 환경행사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u>자원보상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u></p> <p>5. (생 략)</p> | <p>제3조 (대상)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삭제----- -----</p> <p>3. (현행과 같음)</p> <p>4. ----- ----- 민간인 ----- -----</p> <p>5. (현행과 같음)</p> |
| <p>제4조(실비보상의 내용)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u>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 보상금만을 지급한다.</u></p> | <p>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 ----- -----</p> <p>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매식단다 및 교통실비만을 지급한다로 한다.</p> |